

#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 - 공연예술분야 취소사례를 중심으로

- I. 행사개요
- II. 민간예술단체의 공연·행사 취소 사례 유형화
- III. 공공분야(공공극장·축제조직)의 대응 사례 유형화
- IV. 팬데믹 시대의 공정보상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제언

## I. 행사개요

- 행사명 :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 - 공연예술분야 취소사례를 중심으로
- 주최·주관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TF
- 일시 : 2020.12.21.(월) 14:00~16:40
- 목 적 :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 상황 등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실효성 있는  
대안과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
- 진행방식 :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
- 참여인원 : 총 56명

구분	참석 인원 수	비고
민간 사례 발표	8명	
공공기관 사례 발표	4명	
제언 발표	3명	
코로나19대응TF(위원 & 사무처)	9명	
행사 진행 인력	6명	기획, 섭외, 보고서 작성, 행사 관련 기술 진행 등
온라인 참여자	24명	사전 등록자

### □ 토론회 구성

구분	구성
1부 (35분)	<p>주제 : 민간예술단체의 공연·행사 취소 사례</p> <p>사회 : 정유란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, 코로나19대응TF 팀장)</p> <p>사례발표 : 사전에 제출한 3분 영상 송출로 진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아라(전통, 무용 / 몸소리밀조아라)</li> <li>· 김경록(거리예술 / 프로젝트날다)</li> <li>· 천인우(음악 / 브라스넷)</li> <li>· 진영섭(뮤지컬 / 걸쳐홀릭)</li> <li>· 배새암(연극 / 극단 아리랑)</li> <li>· 이규린(뮤지컬 / 주다컬처)</li> <li>· 김길용(무용 / 와이즈발레단)</li> </ul> <p>이정태(시스템(조명/트러스) / 한국이벤트협회 서울경기지회) · 온라인 사례 중 일부 공유 ※구글폼에 접수된 사례 중 일부 소개</p>
2부 (40분)	<p>주제 : 공공기관(공공극장/축제조직)의 대응 사례</p> <p>사회 : 유은선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, 코로나19대응TF)</p> <p>사례발표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준호 (의정부음악극축제 예술감독)</li> <li>· 윤종연 (서울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)</li> <li>· 송재성 (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문예지원부장)</li> <li>· 조강주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)</li> </ul>
3부 (85분)	<p>주제 : 팬데믹 시대의 공정보상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제언</p> <p>사회 : 이원재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, 코로나19대응TF)</p> <p>제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김상철 (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)</li> <li>· 허성훈 (법무법인 리우 변호사)</li> <li>· 김준영 (런던 ILOVESTAGE Ltd. 프로듀서)</li> </ul> <p>자유 토론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간·공공 사례 발표자, 온라인 참여자 중심 자유토론 진행</li> <li>· 토론안건 도출 및 진행은 사회자 판단에 의해 진행</li> </ul>

---

## II. 민간예술단체의 공연·행사 취소 사례 유형화

---

### □ 주요 내용

- 사례 유형1. 공연(행사)의 주최 측에서 사업 취소를 결정한 경우
- 사례 유형2.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이 폐쇄된 경우
- 사례 유형3. 공공 문화예술기관 기획공연이 취소된 경우

### □ 참여자 발언 요지

#### 사례 유형 1. 공연(행사)의 주최 측에서 사업 취소를 결정한 경우

- 김경록 (프로젝트 날다 대표)
  - 코로나19로 인해 봄, 여름, 가을 축제가 모두 취소됨
  - 5월 거리예술 축제 개폐막 공연을 위해 여러 차례 현장답사와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취소를 통보받음
  - 취소 이후, 예술가들을 위한 보상은 미흡 또는 없었다고 판단되었음
  - 거리예술 축제 선정단체는 보통 공연 전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음
  - 8.15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가을 축제 공연까지 현장답사와 협의 과정 중 취소됨
  - 가을 축제 공연 역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었음. 5월 축제와는 다르게 계약상의 특약사항이 있을 것이라 들었지만, 코로나로 인한 취소 시 계약은 무효이고, 예술가들을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은 없었음
- 천인우 (브라소넷 대표)
  - 지방의 지역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작품을 의뢰받아 제작 중에 발표 1개월 앞두고 취소되었음
  - 역사 연구부터 시나리오, 대본, 곡 제작, 다수의 제작회의가 진행되었고, 무대소품 구매, 무대 제작, 영상 제작, 조명 메모리, 음향부분 등이 진행된 상황이었지만,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함
  - 더불어 공연이 10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, 취소된 공연의 앞뒤의 공연은 진행됨
  - 담당자의 공동체 의식과 형평성이 필요함
- 이규린 (주다 킷쳐 대표)
  - 2020년 7월경부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역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창작 초연 뮤지컬을 제작에 참여함
  - 제작으로 참여해 10명이 넘는 출연진과 안무, 무대감독 등 전체적인 파트 섭외, 창작진과 작품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핸들링을 담당함
  - 7월 말 경부터 연습을 시작하여 9월에 해당 지자체에서 2일간 공연을 하고, 디벨롭하여 2021년에 서울공연과 지방투어공연을 목표로 하는 공연이었음
  - 계약서상으로는 공연 셋업 전에 취소될 경우 50%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음
  - 지자체는 50%가 아닌 100%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, 공연을 녹화와 내부시연형태의 관계자 모니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연을 진행해주었음
- 이정태 ((사)한국이벤트협회 서울경기지회장)
  - 시스템 팀은 행사 기획 혹은 대행사에서 하도급을 받거나 지자체 등이 직발주를 하면 이를 수수하고 계약하여 행사를 진행하게 됨

- 지자체 등이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함
- 취소에 그치지 않고 제작비나 준비비 등을 보조하지 않음
- 지난 7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를 조사한 결과, 70%의 감소율을 보임
- '봉화 퍼포먼스'를 준비하여 국회에 시스템 업계 피해의 심각성을 피력했고, 그 결실로 '이벤트산업발전법'을 제정하기로 합의함

## 사례 유형 2.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이 폐쇄된 경우

### ○ 조아라 (몸소리말조아라 대표)

- 몸소리말조아라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판소리움직임탐구 조아라편 공연이 예정되어있었음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최대 50석인 객석을 20석으로 줄여 예매를 받았음
- 그러나 셋업 3일 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알파 단계로 격상되면서 극장으로부터 대면 공연은 불가능하고 촬영만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음
- 극장 측과 창작진들이 대책 마련 돌입하여 촬영 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함
- 공연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제작초기부터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, 작품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과 기존 기록 영상 촬영과는 다른 촬영 방식, 영상 제작에 따른 추가 제작비가 필요하지만,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음
- 본 공연은 외부 지원금 없이 자체 제작 공연이었기 때문에 티켓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추가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았음

### ○ 진영섭 (컬쳐홀릭 대표)

- 먼저, 2020년 1월 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에서의 셋업 2일전 공연이 취소되었음
- 공연장 측은 대관료 환불만 진행됨. 두 번째로 7월과 8월 마찬가지로 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공연 중 공연 취소가 이루어짐
-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 직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공연장의 폐쇄가 급하게 이루어짐
- 공연장 측은 진행된 공연 회차 수만큼의 대관료를 요구하였음
- 공연의 준비과정 중 배우의 연습, 연습실 대관료, 셋업에 대한 비용은 보상 받을 길이 없음

### ○ 김길용 (와이즈발레단 단장)

- 올해 공연의 경우, 70~80%가 취소, 연기되었음
- 12월의 경우, 발레단은 호두까기 인형으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공연이 모두 취소됨
- 연기된 공연 또한 기약이 없는 상황
- 취소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1건
- 예술단체, 무용단들이 연습실, 사무실 임대료, 단원들, 무용수들 월급 등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
- 무용수들은 공연을 준비하다가 공연 전날 취소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상실감이 큰 상황

## 사례 유형 3. 공공 문화예술기관 기획공연이 취소된 경우

### ○ 배새암 (극단 아리랑 제작PD)

- 애초 계획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순회프로그램을 8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함

- 11월 30일에 무대와 조명의 물류 트럭이 출발하면서 셋업이 시작됨
- 그런데 12월 1일 밤, 한 출연자로부터 11월 29일에 아는 배우의 공연을 보러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, 그 배우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연락이 옴
- 셋업 중지 후 출연자는 검사를 받게 함
- 그 과정을 공연장 측과 공유하였음
- 12월 2일 공연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
- 공연 취소에 대한 공연장의 실무진과 경영진의 보상 의견이 달랐지만, 보상이 결정되었음

---

## Ⅲ. 공공분야(공공극장·축제조직)의 대응 사례 유형화

---

### □ 주요내용

- 사례 유형 1. 축제조직의 대응 사례
- 사례 유형 2. 공공극장·기관의 대응 사례

### □ 참여자 발언 요지

#### 사례 유형 1. 축제조직의 대응 사례

##### ○ 최준호 (의정부음악극축제 예술감독)

-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축제기간이었음
-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작품 5개를 취소하고 국내 작품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수정했음
-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져 7월 17일로 연기하였고, 또다시 연기되어 8월 7일부터 16일에 진행하게 됨
- 첫 번째 연기를 하면서 공연 초청료의 70%를 선금으로 지급함
  - 공연 단체 계약서의 천재지변에 의한 위기상황 시 대응을 놓고 초청료 70%를 지급하고자 함
  - 최대한 안전하게 빈틈없이 진행하고자 준비를 함
- 홍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할 수 없었음
- 예술감독으로서의 입장에서 일정을 연기해서 어떻게든 축제를 진행하자고 하였는데, 예술단체가 모두 다 합의를 해주었음
- 최악의 경우, 의정부 예술의전당의 연중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
- 실내공연 2편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, 관계자와 직원들, 공연팀 쪽에서 초청을 할 수 있게 진행하여 객석을 비우지 않고 진행하고, 단체들이 서운하지 않게 좋은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고자 하였음
- 광장에서 진행된 거리극까지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실·내외 공연 모두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하였음

##### ○ 윤종연 (서울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)

- 서울거리예술축제는 다양한 장르에서 다채로운 형식을 장착한 예술가가 함께함
- 공공공간에서 예술의 개입, 공동체의 연대가 목표임
- 초기에는 축제를 취소하는 것보다 다양한 대응방식을 세워서 지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축제 사이트를 축소시켰음
- 2월에 1차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고, 감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에 일정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축제 주제를 낯선 일상으로 변경함
- 안전한 관람방식과 거리예술의 본질적 핵심 방식인 낯선 일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기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분산 배치함
- 코로나 확산 시 공공 공간은 우선 폐쇄되므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공간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음
- 이주 가까운 거리라는 기획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진행하면서 예술단체와의 요구와 바람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짐
- 간담회를 통해 공연료 사전 지급이나 공연 준비과정에 대한 배상에 대한 준비를 했음

-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화문집회 이후 공공 공간이 폐쇄되면서 공간 섭외나 타 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워지고 축제의 규모가 큰 만큼 대처해야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음
- 결국, 축제 취소를 결정하였음
- 단순한 영상 송출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고, 인터뷰나 원고를 요청하면서 예술단체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음
- 이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축제추진단에게 상황을 논의하고 축제개최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었음
-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특수한 상황에 맞는 방식이고,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안전한 선택을 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

## 사례 유형 2. 공공극장·기관의 대응 사례

### ○ 송재성 (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)

-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끊임 없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함
- 2번의 사업 운영대책 마련과 1번의 피해보상안을 마련함
- 1차 사업 운영 대책으로 취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함
  - 1차 사업대책 주요 내용은 온라인 공연, 전시 허용, 거리두기 객석제, 프로그램 횟수 완화, 공연료 선급 지급, 실비보상 등이었음
- 6월 26일에는 예술단체 40여명, 문예회관 종사자 35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간 이해와 의견수렴을 하였음
- 2차 사업운영 대책과 피해보상안을 마련함
  - 2차 사업운영 대책은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장비 임차료 지원,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적용하지 않음, 사업수행기간 연장 등임
- 취소공연 단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9월 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시 예술단체 피해 보상안 방안 문서를 문화회관에 배포하여 시행함
  -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전 연습 비용 인정하고, 계약체결 후 공연 개최기간에 따라 20%부터 100%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보상 범위 및 기준 마련하여 시행함
  - 지자체 예산 미편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문연 지원 금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함
-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의 경우는 갈라 형식의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, 이 역시 결국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하여 보상안대로 보상할 예정임
- 코로나19로 취소된 단체 작품들에 대해서도 문화회관에서 신청할 경우 매칭해서 지원해주었음

### ○ 조강주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)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응사례 발표
- 코로나19 대응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
- 코로나19대응TF를 발족하여, 공연 공간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함
  - 현장 간담회, 전문가 자문 추진, 예술인, 관람객 대상 위기인식 실태조사,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사례분석 등을 진행함
- 대관 취소 관련하여 2020년 공연장대관료 지원 사업에 미환불 대관료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함

- 아르코, 대학로 극장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고, 기획공연 취소 시에도 공연비를 전액 지급함
- 2019년, 2020년 공연예술본부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따른 공연 취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 인정 여부 및 정산 방침을 마련함
- 국제교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변경 접수, 비목 전용, 예산변경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책을 마련함
- 아르코, 대학로 극장 방역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, 시설 공간, 부품 위험 체크 리스트를 별도 연구를 통해 제작
- 공간별 방역관리 지침과 리스크 관리 대응 방안, 수준도 평가, 담당부서와 담당직원 리스트를 제작함

---

## IV. 팬데믹 시대의 공정보상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제언

---

### □ 주요내용

- 제안 1. 공연(행사) 취소 대책 마련
- 제안 2. 취소 공연(행사)에 대한 보상 마련

### 제안 1. 대책 마련

#### ○ 김상철 (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)

- 민간 공연시설보다 공공 공연시설의 방역수칙이 강제됨
  -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공 공연장이 역설적이게도 더 자율성이 떨어지고 더 쓸모가 없게 됨
  - 운영주체를 조금 더 '민간화'하여 방역수칙의 강제로부터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함
- 온라인과 관련된 환경은 공연장에 투입되어야 함
  - 창작에 나서는 예술인들이 온라인 송출과 관련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공연장이 인프라나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임
  - 온라인 공모를 하려면 여기에 매칭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제공되어야 함
- 예술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본이 존재해야 함
  - 협단체 중심의 자산들이 전체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자산으로 개방되어야 함
  - 대표적으로 목동에 설립된 예술인회관이 있음
  - 예술인회관을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공유 자본화하고 공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
-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솔루션이나 해법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들을 현장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음
  - 정책 제안서를 수집했으면 함

#### ○ 허성훈 (법무법인 리우 변호사)

- 우리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불가항력이라고 의사합의를 볼 것인지, 여기에는 코로나19 또는 변종 코로나,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명령에 관한 것도 분명하게 불가항력 조항으로 넣어야 함
  - 과거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있었음
- 취소 또는 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계약서에서 정해두었던 불가항력 사태 때 취소로 갈 것인지 연기로 갈 것인지 기준도 더 명확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
  - 중요한 부분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임
  - 일방적인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
- 정리하면 미리 계약서에 불가항력은 무엇이고, 불가항력 발생 시 공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 신설이 중요함
  - 공연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공적 기관에서도 가급적 계약서의 작성이 최대한 실무적인 관행이나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유도하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함

#### ○ 김준영 (런던 ILOVESTAGE Ltd. 프로듀서)

- 코로나 취소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한국과 런던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음
  - 한국은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반해 영미권에서는 극장, 예술인, 프로듀서, 관객이 전부 다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논의됨
  - 관객들에게는 제작한 영상을 전달하여 보상함
  - 영미권은 작품 영상화가 20~30년 전부터 준비되었음
  -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영상을 정기구독의 형태로 극장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게 함
- **배세암 (극단 아리랑 제작PD)**
- 취소 보상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,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
  - 공공기관에서조차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보상하겠나 생각되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- **이규린 (주다 킬러 대표)**
- 당장의 생계가 걸려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책무를 공공 공연장이 함께 짊어주는 모습은 현장예술인들에게 의미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함
  - 작품을 만드는 모든 참여진들은 대형공연을 제외하고 연습비가 없음
  - 위기상황 속 행정비용은 증가하고 업무량은 늘지만 이제 대한 보상은 없음
  - 민간에서 온전히 감내해야함
  - 공공기관이 현장예술인들에게 위기상황을 함께 걱정해주고 고민해주는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람
- **온라인 사전 등록 의견**
- 문화다양성, 문화예술교육이 모두 취소되었음. 소규모나 다회성 예술 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함
  - 온라인 공연을 위한 영상 촬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  -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
 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함
  -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공연 영상을 30분도 보기 힘들
    - 공연을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상이 공연을 대체한다는 식으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공연은 이 사회에서 어디에 서야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됨

## 제안 2. 보상 마련

- **조강주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)**
- 공연 준비에 소요되는 실손 내역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음
    - 예시로 한문연의 방방곡곡 사업 피해보상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
    - 항목별 실손증빙에 대한 번거로움과 공연 특성별로 인정범위에 대한 다름이 있을 수 있음
  - 공연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음
    - 기간별로 쉽게 결정할 수는 있지만, 공연별, 장르별, 성격에 따른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움
    - 예시로 예식업 환불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
  - 공연일 기준 통상보상과 공연별 특수보상 기준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필요함
    - 기획공연 취소에 대한 보상은 예측가능성이 중요함
- **김상철 (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)**

- 현행 총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정기지급방식을 도입하자
  - ‘창작하는 과정’까지 예술이라고 한다면 과정에도 보상이 이루어져야함
  - 총액 지급 방식이 아닌 주급제나 격주제 등의 방식으로 창작과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
- 공모지원 사업은 ‘주는 쪽’이 아니라 ‘받는 쪽’을 위한 행위임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
  - 최고액지원제에서 정액지원제도로 바뀌면 안정성이 높은 지원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임
  - 고정비용은 개별화하지 말고, 총사업규모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함
- **허성훈 (법무법인 리우 변호사)**
  - 문화예술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에 공정성 또는 공적인 보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이 없을 것 같
  - 코로나 시대의 콘텐츠는 소비와 생산이 조금 구별되는 것 같음
  -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대안이 있더라도 제작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이나 지원이 들어가야 함
  - 그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가 필요함. 공연 계약을 보면 주체들 사이에서도 내용이 다양함
  - 보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계약의 내용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함
- **김준영 (런던 ILOVESTAGE Ltd. 프로듀서)**
  - 영국의 프로듀서 보험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있음
  - 신종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
  - 현재 영국은 각종 협회에서 정부가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 만들어지도록 로비하고 있는 상황임
  - 영미권 공연계에는 환불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, 예매자에게 극장이 직접 전화해서 환불이나 기부를 요청함
  - 영미권은 수십년간 주급으로 배우들의 개런티를 지급함
- **진영섭 (컬쳐홀릭 대표)**
  -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공연이 중단, 취소되었을 경우, 제작사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함
  - 예를 들어, 다음 공연장 사용에 대한 승인, 그리고 대관료의 할인 등이 대표적인 예시임
- **이정태 ((사)한국이벤트협회 서울경기지회장)**
  - 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국회로 가져가서 다행히도 이벤트산업 발전법을 만들기로 협의함
  -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우선 정부적, 국가적 지원을 최대한 한다는 약속임
  - 지자체가 함부로 계약을 취소할 시, 취소로 인한 취소 비용들을 보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임
  - 공연예술 업종도 행사를 함께하는 것이므로 연대해서 시대에 맞는 지원 근거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
- **온라인 사전 등록 의견**
  - 초청료, 출연료, 스태프 인건비 등을 계약서에 넣어서 명문화해야 함
  - 문화예술행사 취소 관련 보상 지침과 법률 마련이 절실함. 국고 사업의 경우 해당 지침이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음. 의무화가 필요함.
  -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. 구두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